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수정입법예고(안) 의견서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수정입법예고(안)에 대한 의견서

수정안	재수정안	의견
제2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해체에 관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가 제1항의 명부에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.	제22조(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③ <u>삭제</u>	•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검토자는 건축주나 통상 시공자가 선정하며, 공기를 단축시키거나 경비를 줄이고 알 잘 듣는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감리자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렵습니다. •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 및 신축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까지 수행(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)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음.

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수정입법예고(안)에 대한 의견서

수정안	재수정안	의견
제1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체공사감리비용 등으로 인해 감리계약의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를 다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해체공사감리자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를 준용한다.	제1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③ <u>삭제</u>	• 적정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감리 - 현행법상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는 상주토록 되어 있고 상주감리업무의 대가는 건축사법에 의해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함 - 실비정액가산식은 감리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사업무 대가의 기준으로 객관적 대가임 - 해체공사감리 책임에 따른 적정한 감리대가가 필요함 - 적정대가를 미지급은 오히려 부실감리로 이어질 것임 • 공사감리자의 교체가 아닌 감리대가기준 필요 - 해체 공사감리자의 교체가 답이 아닌 대가의 정상화가 안전의 초석이 될 것임 - 과도한 감리대가청구로 민원유발자는 감리자 지정명부에서

수정안	재수정안	의견
		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- 비상주감리의 경우 상세한 감 리대가 기준 마련 필요(책임에 따른 비용)

2022. . .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671호 및 제2022-672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
의견을 제출합니다.

제출인 성명 : 이 진 희

812621
(서명 또는 인)

제출인 소속 : 송빛건축사 사무소

제출인 사무소 주소 :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33길 9

제출인 연락처 : 010-7600-2587

국토교통부 장관 귀중